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우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전화(031) 243-5221,2 전송 (031) 251-9770 www.kgta.or.kr

문서번호 경기화협 제 230 호

시행일자 2018. 4. 5.

수신 수신자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시간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운행기록DTG장치 전수 점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경기북부)-607호(2018.3.14.) 및 구리시 교통행정과-10786호(2018.3.23.)와 관련입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에서는 운행기록DTG장치 고장 및 작동불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운행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권고사항 및 모범운전자를 선발·포상 하고자 불임과 같이 운행기록DTG장치 전수 점검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량관리자에게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DTG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운행기록DTG장치가 장착된 모든 차량(운수회사 및 개인)
 제출내용 : '18년 1월 ~ 3월 운행기록자료(60일분 이상 / 기 제출자료 제외)
 제출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eTAS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 안내」 불임 참조
 제출기한 : 2018.4.2.~5.30.(60일간) 까지
 대상지역 :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붙임 : 1. 운행기록DTG장치 전수 점검 계획 1부.
 2.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 안내 1부. 끝.

수신자 :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소재 운송업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사장 이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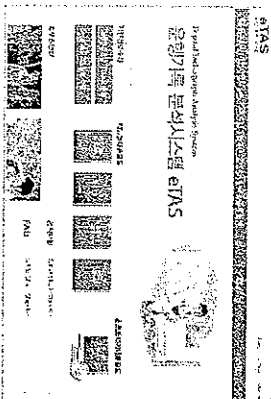




은행기록자료 제출방법 안내

□ 은행기록자료 제출방법


1. 은행기록자료 제출 프로그램 다운로드



① etas.ts2020.kr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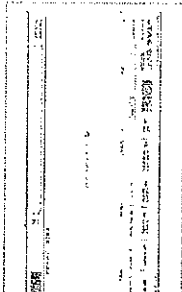
② 소프트웨어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e-TAS 프로그램 실행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tas.ts2020.kr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

3. 기초정보 입력(회당수수회사 차량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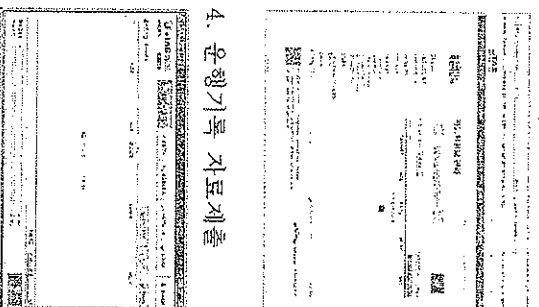


① 운전자 자동차 배차정보관리를 누릅니다.

② 기초정보관리를 클릭한후, 자동차정보관리를 클릭

③ 직접등록을 이용하여, 운수회사에 보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전북12바3456)


4. 은행기록 자료 제출



① 탐색기에서 마우스로 파일을 직접 끌어 놓습니다. (Drag & Drop)

② 전송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 은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etas.ts2020.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매뉴얼과 제출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은행자료 제출방법

② DTG통과제품

③ DTG제품별 사용설명서

④ 시스템 사용설명서(간편매뉴얼)

⑤ 시스템 사용설명서(상세매뉴얼)

『운행기록DTG장치』 전수 점검 계획

□ 추진 배경

○ (대형차 교통사고 예방) 분석된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추진 내용

○ (운행기록장치 점검) 운행기록장치 관리소홀로 인한 정상 작동 상태 점검

* (권력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0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운행기록 활용 단속)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버스, 화물차량의 최소휴게시간 준수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점검

* (권력근거) 교통안전법(제55조 개정) 운행기록 자료 단속 처벌에 활용

○ (모범운전자 선발 활용) 운행기록을 제출한 개인사업자(개인택시, 개별화물) 안전운행 및 법규위반 등 복합평가를 통해 모범 운전자 선발 및 포상

* 포상규모,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체 계획에 의해 별도 홍보 시행

□ 점검 방법

○ 사업용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DTG 자료를 기반으로 DTG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DTG 작동 여부 점검을 위해 필히 DTG 자료 제출 필요

-(제출대상) 운행기록DTG장치가 장착된 모든 차량(운수회사 및 개인)

-(제출내용) '18년 1월~3월 운행기록자료(60일분 이상/ 기 제출자료 제외)

-(제출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eTAS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 안내』 붙임 참조

-(제출기한) 2018. 4. 2. ~ 5. 30.(60일간) 까지

<법적 근거 >

○ (장차 의무 대상 : 교통안전법 제55조)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출 의무 : 교통안전법 제55조)

- 교통안전관리원은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운행기록 제출 요청 및 자동차, 운전자,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단속·처벌 등)에 활용 (시행령 제4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제55조제2항)

○ (미장착, 미보관, 미제출 시 과태료 : 교통안전법 제65조)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9) : 위반시 자동차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 규모, 지역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시행령 제49조)

○ (미제출 시 과태료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여객 2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 (정책 면제 대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최대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 구년형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